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20. 2월 1호 _ Vol. 175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식품안전 주요 NEWS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등 1,800여 곳 특별 점검

- 온라인 배달마켓 · 음식점 등 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지도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 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
보관 온도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5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세스코 식품안전위생진단 서비스

1 Step

FOOD SAFETY CONSULTANT

외식업장의 사업을 돕는
식품안전 컨설턴트가
찾아갑니다



2 Step

3,021

조리시설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3,021가지의 기준으로 철저히
진단합니다

3 Step

UPGRADE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4 Step



세스코의 다양한 업장홍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먼저 찾는
깨끗한 맛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양곡)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1.2.~1.23. (22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립축산식품부, 2월 3일)

정책 / 법령 정보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해썹' 적용업체 우대조치!

- 「식품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5일)



세스코 HACCP 컨설팅 서비스



신뢰성
다수의 정부 인증 보유



고객지향
고객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



전문성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 및
컨설팅 실적 보유

- 식품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식약처 제10호)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식약처 제4호)
- 책임 컨설턴트 및 자문단 운영
- 품목 유형별 특성을 반영, 최적의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결과물 도출
- 컨설턴트 전원 상근 인력으로 책임감 있는 컨설팅 수행
- 고객 눈높이 반영 교육 및 지도 수행
- IPM(해충방제) 노하우 접목을 통한 시설 진단

아몬드 많은 제품이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함량도 높아

- 소포장 견과류, 식이섬유와 무기질 함량 높아 건강에 유익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견과류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별로 원재료 종류와 구성비가 달라 개인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제품(1봉지)당 영양성분은 평균 탄수화물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로 낮은 반면, 식이섬유는 16%, 무기질 중 마그네슘은 11%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2월 3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 삭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중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 설정된 것은 발전된 제조기술을 반영하여 최소 함량 이상이면 적합한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강항균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된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제품 형태를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정 명확화
 - 1)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용어를 해당 고시 명칭으로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록 범위로 개정
2.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 삭제
 - 1)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을 최소 함량 이상으로 변경
3.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 변경
 - 1)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구강 항균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한된 최종제품의 요건 변경
4.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 1) 인과관계 가능성이 보고된 의약품과 함께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약품 병용섭취 문구 개정
5. 키토올리고당의 인정 내용 추가
 - 1)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키토올리고당의 인정내역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규격 개정
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명확화
7. 타 규정 관련 고시 내용 및 용어 동일화
8. 시험법 개정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31일)



세스코 시험분석 서비스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HACCP 위해요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0호(식품), 제59호(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첨단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증 하는 국가공인검사기관

△ 주요 단속 정보

'20년 2월~3월 정기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기간
○ 식육추출가공품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1차)	2.3 ~ 2.28
○ 1분기 온라인 인기식품 수거검사	2.10 ~ 2.21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1차)	2.10 ~ 2.21
○ 특수용도식품(영.유아식, 환자용식품 등) 제조업체, 온라인 전용마켓.반찬가게 등 점검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업체 점검	2.17 ~ 2.21
○ 봄철 대비 약.탁주 제조업체 지도점검(1차)	2.17 ~ 2.21
○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 [점검대상] 학교급식(임시급식 납품업체 포함) · 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 식재료 납품업체, 분식점 등 조리 · 판매업체	3.2 ~ 3.1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2020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0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1. 사업명 :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 · 가공 소규모 업소
(축산물)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4. 사업규모 및 지원규모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 · 가공 소규모 업소 600개소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108개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4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academy.co.kr

HACCP 정기 과정 (3/11, 3/25)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3/11, 4/8)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3/12~13, 3/26~27)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위생용품 위생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제4호) cescoacademy.co.kr

신규 / 보수 (3/20, 4/17, 5/22)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
- 신규 : 제조업/수입업/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 (최초 4시간)
- 보수 :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 (매년 3시간)



식품 전문 교육

cescoacademy.co.kr



표시 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4/21)

- 최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 표시 연관 법령을 한번에 (식품위생법, 공전, 원산지표시법 등 기타 법령)
- 사례, 실습 위주로 원산지, 영양성분, 표시사항 작성/분석, 오류사항 찾기 실습도 한번에~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4/16)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등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위생법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식품위생법	41조	19.12.3 (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 - 다만,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6조	19.1.15 (19.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판매종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배달업)가 소비자로부터 조리한 식품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75조	19.4.30 (19.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압류, 폐기를 거부, 방해, 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52조	19.5.21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 변조 등이 위반행위 원인으로 불기소 처분 또는 신고 유에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조의2	19.6.12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신설
	36조, 별표14	19.4.19 (19.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장소에서 일반음식점과 유계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같이 할 경우 분리 외에도 구분, 구획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동일 제과점 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가 5km 이내인 다른 관할 구역의 영업소 조리장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진열, 판매시설 설치 예외 단서 신설
	40~43조, 별지	19.11.20 (19.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허가 등 신고시 제출하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함
	44조, 별표17	19.6.12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제조, 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 판매, 운반업자 등 세부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
	52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업종간 식품위생교육 갈음대상에 식품소분 판매업종 추가
	57조, 별표17	19.4.19 (19.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을 재사용 불가 범위 명확화 - (기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품 → (개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위생법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7조, 별표2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 대상 신설, 확대 - 위해요소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규정 신설 -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CCP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시 인증취소 규정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
	89조, 별표23	19.6.12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 검사, 수거 및 압류, 폐기를 거부, 방해, 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 주요 법령 변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조	18.12.11 (19.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제품은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함
	5조, 6조, 7조, 12조	19.1.15 (19.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고 간주제 도입
	17조	19.1.15 (19.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변경건강기능식품 표시의무자 명확화
	32조	19.1.15 (19.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압류, 폐기를 거부, 방해, 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9.7.9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개선 -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만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4조, 5조, 19조	19.7.31 (19.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새로하는 경우 등에는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5조	19.12.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 영업신고 간소화 (박람회, 행사장)
	13조	19.12.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실적을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
	22조	19.12.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29조	19.7.31 (2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화

“ 주요 법령 변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9.7.31 (19.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시설기준 강화
		19.12.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 - 의약품 제조업 시설(내복용 제제만 한함)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별표9	19.6.12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영업자 등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영업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압류, 폐기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영업자가 위생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섭취시 주의사항)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 주요 법령 변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6조	19.4.23 (19.4.23)	•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정당한 사유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12조	19.4.23 (19.4.23)	• 해외작업장 등록 전에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3조	19.4.23 (19.10.24)	•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정당한 사유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	19.5.14 (19.6.12)	•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의 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함
	별표2	19.5.14 (19.6.12)	•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0조의2	19.6.19 (19.6.19)	•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 • 수입위생평가 절차 및 방법은 별표5에 따르도록 규정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
	24조	19.6.19 (19.6.19)	•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7조	19.6.19 (19.6.19)	• 통관단계에서 할랄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서식	19.6.19 (19.6.19)	•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인지 여부 확인란 신설
	별표6	19.11.18 (19.11.18)	•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함을 명확화

“ 주요 법령 변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	19.11.18 (19.11.18)	• 축산물 수입판매업자가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접객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등이 기재된 거래영세서 발급의무 삭제
	별표9	19.11.18 (20.1.1)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 법령 변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축산물위생 관리법	14조	18.12.11 (19.6.12)	•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31조의6	18.12.11 (19.6.12)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물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 등은 이물 운입 원신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축산물위생 시행령	21조	19.6.4 (19.6.12)	• 슈퍼마켓 등 점포 경영자 등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닭, 오리,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26조	19.6.4 (19.6.12)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의 판매제품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52조	19.6.25 (19.6.25)	•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재료가 아닌 것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이물로 정함 • 축산물에 포함된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이물 발견 보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리도록 함.
	별표5	19.9.4 (20.1.1)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을 유행별로 검사하는 경우 해당 유행별 품목의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와 12개를 초과한 경우로 구분하여 그 검사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별표11	19.9.4 (20.1.1)	•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한 영업자가 이물 발생 방지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물운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예정	-	• 축산물판매업소 다른 영업장과 구분 허용 • 전통시장에서 축산물의 영업장 범위 확대